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1
----------	-----

제출년월일 : 2021. 5.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 1. 12., 시행 2022. 1. 13.)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연령 및 청구인수 기준 조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주민의 감사청구)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4. 15. ~ 5. 5.(20일)

- 예고결과: 의견있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1건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2) 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3) 비용추계 등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부패/인권/성별/아동 영향평가결과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외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평가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6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21조제1항</u>----- ----- ----- -----.</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u>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200명 미만</u>으로 한다.</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u>제21조제1항</u>----- ----- ----- ----- ----- <u>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u>-----.</p>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정표근